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영 화 및 비 디 오 물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305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과금 면제 기준인 매출액 감소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출액 감소비율(제9조의4제3항)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2